이랜드 PEER 둔산 임차인 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8번지

▮ 공급대상 : 60~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30호

▮ 시 행 사 : ㈜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공사 : ㈜이랜드건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 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3. 08. 10.이며, 이는 청약 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 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청년 셰어형 : 상기 ①항의 청년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1실 1인 거주 대상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입주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2023. 8. 10.)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소득요건 및 청년 특별공급의 연령·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공급안내문 등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이랜드피어둔산.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홈페이지(이랜드피어둔산.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셰어형 제외),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산추첨 및 동호수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셰어형 제외)
■ 일반공급은 총 세대수에서 특별공급(172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대 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임차인이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중 100만원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계약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약금 일체가 위약금으로 공제),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위약금(해약 당월 기준 표준형 임대료 24개월치의 10%)공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당첨을 취소처리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 소유기준 완화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청 공동주택과 – 18672호(2023. 08. 04.)로 임차인 모집공고 신고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8번지

■ 공급규모 : 업무시설(오피스텔) 지하 6층 ~ 지상 40층 2개동 430세대(특별공급 1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일정

구 분	신청	신청방법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심사	계약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2023.08.16.(수) ~ 08.18.(금) 10:00 ~ 16:00	홍보관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층)	2023.08.23.(수) 16:00 이후 (이랜드피어둔산.kr)	2023.08.24.(목) ~ 08.29(화) 10:00 ~ 17:00	2023.08.30.(수) ~ 09.01(금) 10:00 ~ 17:00
특별공급 (청년,신혼)	2023.08.16.(수) ~ 08.18.(금) 09:00 ~ 17:30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 (www.applyhome.co.kr)	2023.08.23.(수) 16:00 이후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2023.08.16.(수) ~ 08.18.(금) 09:00 ~ 17:30	*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	2023.08.23.(수) 16:00 이후 (www.applyhome.co.kr)		

■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청년	신혼	청년 셰어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023850016	75A-1(셰어)	75.8631	44.2924	120.1555	52.6115	172.7670	0	0	33	0	33	2023년 10월 (예정)
		75B-1(셰어)	75.3155	44.5786	119.8941	52.2318	172.1258	0	0	11	0	11	
		75A(신혼)	75.4834	43.8518	119.3352	52.3482	171.6834	0	75	0	0	75	
		75B(청년)	75.0604	44.0726	119.1330	52.0548	171.1878	25	0	0	0	25	
		84A(신혼)	84.9935	51.1834	136.1769	58.9435	195.1204	0	28	0	0	28	
		84A-1	84.9935	51.1834	136.1769	58.9435	195.1204	0	0	0	44	44	
		84B	84.8348	49.1891	134.0239	58.8334	192.8573	0	0	0	72	72	
		84C	84.9894	48.2414	133.2308	58.9407	192.1715	0	0	0	72	72	
		84D	84.9986	50.3475	135.3461	58.9470	194.2932	0	0	0	70	70	

■ 셰어형 실별 면적

타입	공급 대상	전용면적(㎡)	공용공간 면적(㎡)	침실 1(접견실) 면적(㎡)				침실 2(회의실) 면적(㎡)		
			거실(사무실), 주방, 현관	침실	화장실 1	실외기실 등	소계	침실	화장실 2	소계
75A-1(셰어)	청년 셰어형	75.8631	32.0162	15.6914	3.9244	3.9477	23.5635	16.8520	3.4314	20.2834
75B-1(셰어)		75.3155	31.8911	15.7384	3.8640	3.3086	22.9110	17.0820	3.4314	20.5134

- 75A-1(셰어)와 75B-1(셰어)는 각 세대당 2인이 입주하며, 개별 공간(침실1[접견실, 접견실 내 화장실, 실외기실 등 포함], 침실2[회의실, 회의실 내 화장실 포함])을 제외한 세대 출입문, 거실(사무실)과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의 침실 1(접견실)에는 점용 가능한 실외기실이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해당 침실에 소음과 진동, 열기가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는 청약홈 청약신청이 아닌, 홍보관 방문접수 형태로 진행됩니다.**
- 주택 타입 84A형과 84A-1형은 공급 유형(특별/일반)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명은 건축설계도서에 표기된 타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동일한 타입 신청, 임대조건 및 임차인 자격순위 내 동호 선정은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여 선정됩니다. 소음, 저층 배정, 가격 등을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도 불가합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에 2인 동반입주를 희망하시는 분은 청약신청 시 동반입주를 하실 분과 함께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청약을 신청하거나, 청약신청에 필요한 대리인 서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대표신청자를 선임하여 청약하셔야 하며, 신청 자격 중 형제, 자매, 지인 가능하나, 지인의 경우 동성만 가능합니다. 신청완료 후 한명이라도 청약 취소 시 전원 신청 취소되며,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됩니다. 또한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자 전원이 취소된 경우, 구성원 변경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 기간 내 신청취소 후 재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팀 구성원간 주민등록번호 공유(노출)가 불가피한 점 유의 바랍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의 홍보관 방문 청약접수 시에도 타입만 선택 가능하고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으며, **셰어 세대의 실 배정은 서류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 성별과 동반입주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무작위 추첨의 형태로 세대 및 호실이 배정됩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의 관리비는 거주하는 2인이 매월 1/N로 나눠서 납부하고, 만약 임차인 1인이 중도에 퇴거하여 남은 1인 단독으로 75A-1(셰어) 또는 75B-1(셰어)에 거주할 경우,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세대의 관리비 전액을 납부합니다.
- 본 주택은 인터넷 청약 시, 타입 기준 (75A/75B/84A/84A-1/84B/84C/84D)로 구분되어 청약접수가 진행되오니, 청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 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타입 표기안내

타입 표기방식	75A-1(셰어)	75B-1(셰어)	75A	75B	84A	84A-1	84B	84C	84D
공고상 전용면적(㎡)	75.8631	75.3155	75.4834	75.0604	84.9935	84.9935	84.8348	84.9894	84.9986

■ 타입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8년 이상('31년 12월까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세대, 천원)

구분	주택형	공급유형	공급 세대수	층수	표준형		선택형 Ⅰ		선택형 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오피스텔 (주거용)	75A-1(셰어)	특별공급	33	4~14층	2,000	373	48,793	209	43,371	228
	75B-1(셰어)	특별공급	11	4~14층	2,000	370	48,793	206	43,371	225
	75A(신혼)	특별공급	75	15~40층	108,000	380	97,457	417	86,629	455
	75B(청년)	특별공급	25	15~40층	107,000	380	96,457	417	85,629	455
	84A(신혼)	특별공급	28	4,8,12,16층	120,000	425	109,457	462	98,629	500
	84A-1	일반공급	44	16,21,25,29, 33,37층	152,000	538	137,571	589	122,286	642
	84B	일반공급	72	5,9,13,17,22, 26,30,34,38층	152,000	534	137,571	585	122,286	638
	84C	일반공급	72	6,10,14,18,23, 27,31,35,39층	152,000	537	137,571	588	122,286	641
	84D	일반공급	70	7,11,15,19,24, 28,32,36,40층	153,000	535	138,571	585	123,286	639

▪ **75A-1(셰어)와 75B-1(셰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실(침실) 기준입니다.**

▪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며, 공용면적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히, 75A-1(셰어)와**

75B-1(셰어)의 침실 1[접견실]과 침실 2[회의실]의 면적이 다르거나 실외기실 등의 유무를 이유로 임대조건을 차등 적용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호수별 임대조건은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형 특별공급 28세대와 84A-1형 일반공급 44세대는 동일 타입으로 주택 면적과 여건은 모두 동일하므로, 공평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조건인 일반공급이 높은 층부터 배정되며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률(인상분)은 계약 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입주 후 최초 임대차기간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 유효합니다.
- 당첨 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1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했을 경우에도 열쇠 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당사 주택임대차계약 위약금은 100만원입니다. 단, 75A-1(셰어)와 75B-1(셰어) 표준형의 경우 계약금 전액(20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합니다. 또한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부할 시 은행기관 등에 대출로 인하여 잔금의 일부가 공제되어 임대보증금 계좌에 입금되었을 경우, 임차인 본인이 직접 미납된 임대보증금까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 완납이 확인된 후에 열쇠 불출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임차인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대한 파손(고장) 시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오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단, 75A-1(셰어)와 75B-1(셰어) 표준형의 경우, 100만원을 유보금으로 공제합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의 원상복구 기준은 개인 침실 내에서 발생하는 파손과 멸실은 해당 침실에 거주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공용 부분의 파손과 멸실은 해당 세대에 거주한 임차인 2인 모두의 책임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정 임차인 1인이 해당 부위를 파손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부과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정산합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을 표준형 및 선택형1, 선택형2(총 3개의 임대조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선택한 임대조

건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점에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 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최초 모집공고일(2023.08.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청약통장 가입여부, 자산보유액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모집안내 (청년, 신혼부부)

<table>
<tr><th colspan="2">모집분야</th><th>선발인원</th><th>자격요건</th><th>선정방법</th></tr>
<tr><td rowspan="2">특별공급</td><td>청년</td><td>25세대</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8.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td><td rowspan="2">•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5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6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혼부부</td><td>103세대</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8.10.]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td></tr>
</table>

■ **특별공급 모집안내 (청년 셰어형)**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44세대 (88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8.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세대의 실(침실 1[접견실], 침실 2[회의실])별 1인으로 구성되며 각 실별 청약자격이 부여됨. - 셰어형 청약접수는 홍보관 방문접수 방식으로 진행함.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 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50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60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2인 중 계약자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1주택을 신청(청약)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해당 타입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타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계약자와 동반 입주하고자 하는 계약자 2인 모두 상기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2022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 이하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9,362,786	10,023,933
110% 이하	3,689,272	5,505,914	7,390,018	8,384,262	8,844,541	9,571,803	10,299,065	11,026,326
120% 이하	4,024,661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11,235,343	12,028,720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원)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인, 2인, 3인, 4인, 5인의 소득금액까지만 공표되므로, 6인 이상 가구부터는 1인당 평균소득(661,147원)을 합산하여 책정됩니다.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급여액(21번 항목)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상기 소득기준은 금회 모집공고에 적용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및 후속 임차인 모집 시점에는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일반공급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8.1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8.10.)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타입 (셰어형 제외)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청약 서비스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약은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어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 영업일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및 낙첨자를 포함한 신청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방법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 영업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환불계좌 명의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환불 신청계좌가 오류 또는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이용대상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 신한,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공공지원민간임대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입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접속 후 PC청약방법 참조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당첨 시, 모든 당첨을 취소 처리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마감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은 신청기간 당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만 가능하며, 17시 30분 이후에는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네이버 인증서/KB국민인증서/토스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및 셰어하우스 신청자 홍보관 방문 청약 안내사항

▪ 청약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 홍보관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래 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셰어하우스 청약 신청자의 경우, 홍보관 방문접수를 통해 청약 가능합니다. (타입명 : 75A-1(셰어) 및 75B-1(셰어))

▪ 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신청장소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75A-1(셰어), 75B-1(셰어) 신청자	특별공급: 2023.08.16(수) ~ 2023.08.18(금) [10:00 ~ 16:00] 일반공급: 2023.08.16(수) ~ 2023.08.18(금) [10:00 ~ 16:00]	홍보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층

▪ 구비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td><td colspan="2">· 특별공급,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홍보관 방문
※ 홍보관에서는 현금수납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만 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신청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td><th>본인발급용 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 1통(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td></tr>
</table>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08.10.)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청약신청금 예치 및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제4항)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 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8.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9.「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table>
<tr><th>구 분</th><th>신청</th><th>신청방법</th><th>당첨자 발표</th><th>서류제출 및 심사</th><th>계약</th></tr>
<tr><td>특별공급
(청년
셰어형)</td><td>2023.08.16.(수) ~ 08.18.(금)
10:00 ~ 16:00</td><td>홍보관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층)</td><td>2023.08.23.(수) 16:00 이후
(이랜드피어둔산.kr)</td><td rowspan="3">2023.08.24.(목) ~ 08.29(화)
10:00 ~ 17:00</td><td rowspan="3">2023.08.30.(수) ~ 09.01(금)
10:00 ~ 17:00</td></tr>
<tr><td>특별공급
(청년,신혼)</td><td>2023.08.16.(수) ~ 08.18.(금)
09:00 ~ 17:30</td><td rowspan="2">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
(www.applyhome.co.kr)

*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접수를 도와드립니다.</td><td>2023.08.23.(수) 16:00 이후
(www.applyhome.co.kr)</td></tr>
<tr><td>일반공급</td><td>2023.08.16.(수) ~ 08.18.(금)
09:00 ~ 17:30</td><td>2023.08.23.(수) 16:00 이후
(www.applyhome.co.kr)</td></tr>
</table>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이랜드피어둔산.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셰어형 제외)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임차인 선정 시 타입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타입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이랜드피어둔산.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대상 주택의 임차인을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입주자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 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됨)

5. 서류 제출안내

■ 서류 제출일정 및 장소

서류제출 및 심사기간	서류 제출방법	서류 제출주소
2023.08.24.(목) ~ 2023.08.29.(화) 10:00 ~ 17:00	· 당첨자는 서류 제출기한 내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제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및 방문제출 시에는 서류원본을 제출해주시고, 이메일 접수 시에는 서류 스캔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나, 이메일 접수 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도착우편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층 이랜드 PEER 둔산 홍보관

-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당첨자 모두 하단의 서류심사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시어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별공급 당첨자는 본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가구 구성 및 소득 유형 등에 따른 자세한 서류안내문은 당첨자 발표 후 홈페이지(이랜드피어둔산.kr)에 안내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특성상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지연, 당첨자의 실수로 인한 서류 미비 혹은 잘못된 서류제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심사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일반공급·특별공급)			○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2. 신분증 사본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02.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증명서류 함께 구비)
			○		3.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6.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7.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 정보	**일반**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분양권 주택 확인용) ※ 청약홈(www.applyhome.co.kr)→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인쇄하기(PC에서만 가능)
						특별	**청년, 셰어**	본인	
							신혼	본인,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8.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특별 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월평균 소득현황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3.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업로드 예정, 작성 및 인감날인 후 제출
				○	4. 사실 증명원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소득이 없는 경우
				○	5.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 소득 관련 가구원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청년 / 청년 셰어형 (2인 모두)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신혼 부부	공통		○	1.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 관련 가구원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임차인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홍보관 비치)
			○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 배우자			· 혼인신고일 및 혼인 여부 확인, '상세'로 발급
		혼인상태	○		1.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예정	○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예비 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로 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예비배우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4. 예비 배우자 신분증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당사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3. 08. 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 분		내 용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 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제무재표	· 세무서
	보험모집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세무서 · 해당 직장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무직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당사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	· 세무서 · 접수장소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 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무소득자인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및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 08. 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6. 계약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일정	계약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023.08.30.(수) ~ 09.01.(금) 10:00 ~ 17:00	당사 홍보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층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본인 계약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무주택서약서(홍보관 비치) · 안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용) 또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신혼부부 중 분리 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 · 계약금 입금확인증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대리 포함)	**· 본인 계약 시 당첨자 본인 명의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도장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필수, 홍보관 비치) · 당첨자 명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아파트 임대차계약 위임용) 1통, 당첨자 본인 인감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모집공고일(2023. 08. 1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차인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계약금, 잔금	KB국민은행	032901-04-356635	㈜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u>임대보증금 입금 시 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A동 101호) 입금내역에 호수가 없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 납부 확인 및 계약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인 당첨 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호실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7. 유의사항

■ 임차인 사전방문 : 2023년 9월 중 (예정)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45일 전 2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임차인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기간은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임차인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3년 10월 중 (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 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안내(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 이하의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이하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발급되는 보증서 및 보증약관 내용에 따릅니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 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

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공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 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공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부대복리시설** : 북카페(라운지), 키즈북카페·키즈룸, 피트니스, 자가건강검진실, G.X룸, 강의실(멀티룸), 세대창고,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공용세탁실, 코워킹룸, 소호룸 등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오피스텔의 사업주체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이베데스다제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이베데스다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하였습니다.
- 이 오피스텔은 실임차인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주택법」제101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이랜드피어둔산.kr)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홍보관, 평면도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임차인이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임대의무기간 8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8년 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단,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제·해지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일반관리비와 세대관리비(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지정기간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 용품 등과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 등)는 임대사업자,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관계 법령에 따라 외부인 이용 가능시설(상가 등) 설치가 필수적이고, 해당 시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차대수를 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의 주차가 일부 허용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주차장 운영관리 업체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며, 주차료의 책정 및 부과기준은 임대료 및 관리비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며,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부과·징수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정식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 또는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을 통하여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적·윤리적 문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 및 향후 제정되는 이랜드 PEER 둔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설계·시공상 유의사항

■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이랜드건설이 시공하게 됩니다. 향후 시공 관련 문의 및 시공상 하자 관련 사항은 ㈜이랜드건설에서 접수를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에는 후드, 3구 전기쿡탑(하이라이트-도시가스 사용불가), 세탁기, 냉장고, 천정형 에어컨이 빌트인 가전으로 제공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5A, 75B에는 후드, 3구 전기쿡탑(하이브리드-도시가스 사용불가,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 겸용)이 제공되며, 거실과 안방에 배관 및 전원선이 시공되며, 에어컨은 빌트인 가전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외기실 공간의 제약으로 에어컨은 2in1 방식으로만 시공이 가능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 84A-1, 84B, 84C, 84D에는 후드, 3구 전기쿡탑(하이브리드-도시가스 사용불가, 인덕션 및 하이라이트 겸용)이 제공되며, 거실과 안방에 배관 및 전원선이 시공되며, 에어컨은 빌트인 가전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외기실 공간상 제약으로 에어컨은 2in1 방식으로만 시공이 가능하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창호는 입면분할 창호로 시공됩니다. 입면분할 창호는 주택 및 오피스텔에 널리 설치되는 창호로, 창의 위·아래를 분할하여 하부 창은 접합유리로 고정시켜 난간 대용으로 사용하므로 개폐가 불가능하고, 상부 창은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창으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난간 없이 외부 조망이 가능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반면, 일반 창호보다 열리는 면적이 적어 환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의 크기가 대형 사이즈로 침대 등 가구 설치 시 창문의 일부가 가구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배치 및 구조,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 형태, 입면구조 및 입면장식 몰딩 등의 파손과 안전문제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능합니다. 입주 시 전 세대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경계벽은 콘크리트 벽체 및 건식벽체로 시공되었으며, 차음구조 성능기준(1등급), 내화구조 성능기준(2시간)을 만족하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대간벽을 타공(못박음) 또는 파손할 경우, 세대 간 소음 및 내화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타공 및 파손은 절대 불가합니다.**

■ 소방 활동으로 지하 1층에 설치된 제연휀룸 작동 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20층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주거공간이 없습니다. 대피공간 계단실 사용 및 자세한 피난 동선은 별도의 안내표지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는 A동 및 B동 각각 임차인용 5대(피난용 1대 포함)가 설치되어 있고, 별도로 근린 상가 전용 엘리베이터 2대(지하 1층~지상 2층)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2층 근린상가의 경우 세대 보안관리를 위해 메인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을 통해 접근이 불가하며, 각 동별로 근린상가 전용 계단실(지하 1층~지상 2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북측과 남측에 비상 시 소방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소방차정차구역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재 진압 등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소방차정차구역에는 시설물 설치, 물건 적치, 주정차 등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부 세대의 경우 옥외공간 및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외부 실외기 설치구역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 호수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일지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 일부 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 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경계벽 및 세대 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한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구조물 및 공작물(광고탑, 통신 안테나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옥외 간판의 경우 인허가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등은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 성능, 창호기밀 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추가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 세대 등으로 인한 열 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혹한기 시설물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배관에 설치된 열선으로 인해 겨울철 공용 전기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호수에 따라 리플릿 및 팸플릿의 평면도가 좌우 대칭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비산분진,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홍보관 내방을 통해 이를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리플릿 및 팸플릿상의 평면도와 달리 건축심의 및 인허가(건축허가변경) 과정에 따라 구조, 설비 및 모양, 면적 및 실 구성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 간에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 간에 차임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세대 형별 대지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대지지분을 각 형별 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 조명시설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세대의 내부 기둥 및 창문의 유무, 위치 상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 전기 등의 급배기구) 주차장 TOP LIGHT, 오수맨홀 및 지하 쓰레기 분리수거장, 저층부 냉난방 실외기 설치 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악취, 진동,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 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사인, 외벽 마감, 식재, 바닥 포장, 단지 내 조경,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방향·층에 따른 일조권 및 도로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 단지 및 건물, 시설물, 공원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 사항을 임의 제작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 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 시 동질 또는 동급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시공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될 수 있고 타일, 벽지, 마루 등 기타 마감자재도 생산시기 및 생산공장의 여건에 따라 색상이나 질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체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각 면적별 단위세대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가구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구(주방, 일반, 선반가구), 샤시, 욕실장, 샤워부스 및 샤워파티션 등은 후 입찰 품목으로 본 공사 시 업체가 선정되어 설치되므로 동등 이상의 유사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의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욕실 등)

■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세대 내부 천장 등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모집 시 홍보물 물 실내 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 및 게시된 모형, CG, VR, 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 및 수량,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상품의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단지 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수종, 식재 개수 등)의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관리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이나 40층 동 간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 현관문 앞 EV홀, 전기실, 공용부 수도 및 전기 등을 사유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 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 변경에 따라 조경 선형, 포장, 조경 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는 임차인 모집과정에서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을 개선하고 건축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건물의 배치구조와 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은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 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전 세대 주방가구 중 밥솥장 및 전자레인지장의 폭과 높이는 밥솥 구매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장의 폭은 제작공정상 세대마다 미세하게 상이할 수 있사오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A-1(셰어)와 75B-1(셰어)에는 세탁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75A와 75B, 84A, 84B, 84C, 84D 타입은 세탁실 공간 부족으로 건조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 설치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구입 또는 설치 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A, 84A-1, 84B, 84C, 84D 타입의 경우 TV 설치 후 소파 공간이 좁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TV 설치 후 소파 배치를 원하시는 계약자는 구입 또는 설치 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5B 타입의 경우 거실 기둥 돌출로 인해 TV 및 가구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TV 및 가구 구입 또는 설치 전 반드시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4B 타입의 경우 침대 배치 위치에 따라 테라스 문 개폐 시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드레스룸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주방 렌지 후드 내에는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장 및 싱크장(개수대장)의 경우, 임차인이 상시 이용 가능한 상부장이 아니라, 점검용 가구입니다. 이에 손잡이 기능을 제거하고, 푸시 하드웨어로 시공 및 배수구 시공이 되어있으므로 해당 공간에 수납 및 개폐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목도어와 PL창호, 화장대, 샤워부스 칸막이 등의 기타 시설과의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목문틀 상부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목문틀에 설치되는 도어스토퍼의 특성상 강한 충격이 발생 시 파손율이 높아 주의를 요합니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의 샤워부스는 접합유리 형태로, 별도 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4층~10층 세대 내 피난용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의 형태와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난용 완강기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11층 이상에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간벽은 철근콘크리트 및 건식벽체로 시공되었으며, 차음구조 성능기준(1등급), 내화구조 성능기준(2시간)을 만족하는 구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세대간벽을 타공(못박음) 또는 파손할 경우, 세대 간 소음 및 내화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사오니 타공 및 파손은 절대 불가합니다.
- 세대 싱크대 및 쿡탑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거실에는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배연창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호는 수동으로 개폐가 불가능할 수 있고**

수동개폐가 불가능할 경우 배연창 개폐기에 설치된 버튼으로 전동 개폐가 가능합니다.

- **배연창이 설치된 창호는 단창 구조로 이중창호 대비 단열성능이 떨어지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층 이하의 세대에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관이 진입하기 위한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소방관 진입창의 유리 중앙에는 빨간색 역삼각형 모양의 식별이 용이한 소방관 진입 표식이 부착되고, 모서리 중 한 곳에는 타격지점 표식이 부착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본 표식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 진입창호 표식 및 피난완강기함, 배연창 등 피난 안전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로 임차인이 위치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훼손 및 작동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동호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84A, 84A-1, 84B, 84C, 84D에는 2개 층이 오픈된 구조의 테라스가 있으며, 면적과 위치, 형태는 각 세대의 구조적 특성과 설비 등 인프라 시설의 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A, 84A-1, 84B, 84C, 84D의 테라스는 2개 층이 오픈되어 상부 세대에서 하부 세대의 테라스가 보이는 구조로, 사생활권 침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테라스 이용 시 인접 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연, 취사, 고성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A동과 B동의 4층 84A타입은(401, 402, 404, 405호) 외부 공간으로 연결되는 테라스가 2개소 있으며 1개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1개는 당 사업장 입면 특성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외부로 통행이 불가능한 입면분할 창호로 시공되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간 벽체 대부분이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중량물 설치나 못 박음은 불가합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은 불가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단열성능 확보를 위한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는 대칭형으로 좌우가 반전될 수 있으니, 계약 시 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 환기시스템 급배기, 보일러 연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냄새, 분진, 소음, 수증기, 동절기 낙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층 건물의 특성상 강풍 및 강한 기압차가 발생할 경우 일부 세대의 세대 급배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실외기 위치의 인근 세대는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드레스룸, 붙박이장, 세탁실에는 별도의 강제 환기설비가 없어 결로나 곰팡이 등에 취약하고, 특히 세탁실에 건조기를 설치할 경우 습기 및 열기로 인해 도어와 마감재가 변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환기 미비나 건조기 사용 등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생활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기본 천정고는 2.3m로 시공됩니다. (우물천정, 실외기실, 욕실 등 제외)
- 세대 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주방 하부장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방에 설치되는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퇴거 시에는 다음 임차인의 에어컨 설치를 위해 질소 충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세대 화장실 천정, 세탁실, 기타 실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내외 온도차가 크거나 음식조리, 가습기사용, 실내 빨래건조 등으로 습기가 많을 경우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키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실외기실에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마감재 (마루재,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실별 치수에는 천정몰딩이나, 하부걸레받이, 마루판의 치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은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는 창호 개폐방향이나 창호 분할 등도 임차인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 창호 나누기, 크기, 사양 등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시공 여건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상세 및 세부치수, 부속철물 등은 제작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창호 형태, 크기, 창호 주변 벽체 길이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임차인의 편의성 확보나 품질향상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직접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면적 및 벽체 구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인조대리석과 천연석 등 석재류와 타일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별 각 월패드, 콘센트와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의 마감재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의 상,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주거서비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임차인 모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실별 배치 및 면적,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나 모형상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벽체,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각종 설비 및 시설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근린상가용 주차장,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은 주거용 주차장으로 운영 예정이지만 주차장 운영주체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공용세탁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건물의 3층에는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관리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시설계획, 공간구성, 실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40층에는 게스트하우스 및 주민공동시설과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을 위한 동간 연결통로(스카이브릿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동간 연결통로 하부 및 근접한 세대의 경우 일조 및 조망, 프라이버시에 불리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 운영에 따른 소음과 강풍 등으로 진동이 발생할 경우 동간 연결 통로의 면진받침 및 익스펜션조인트 동작음 등에 인한 소음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수와 호수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므로 일조, 조망, 소음으로 인한 동호 교환은 불가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시간은 향후 주거서비스 운영 관리업체와 운영방식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임차인이 입주를 완료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결성된 후 임차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 및 주거서비스 운영 관리업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 개시시점과 운영시간 역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주거서비스 이용료, 세대부과금 등 금액 역시 확정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에도 운영 개시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주거서비스 이용은 추후 선정되는 운영 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원활한 주거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세대부과금 등 임대료 및 관리비 외 별도 비용이 부과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하시시기 바라며, 추후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요 장비 구동과 관련한 전기, 가스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 유·무상 주거서비스의 제공 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임차인은 운영권 및 사용수익 등을 요청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은 관리주체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의해 운영(공간 배치, 예산, 프로그램 등)될 예정으로 사용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부 내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의 공용 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대시설의 경우 지하층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권, 소음 등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한 임대인과 서비스 업체 간의 양해각서, 협약서 등의 체결, 변경, 해제에 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관

■ 주동 옥탑이나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 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 옥탑 1층에는 옥탑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보호용 도체, 태양광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탑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생산전력은 공용 전력의 일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임차인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건물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저층부(지상 1~4층) 외벽에 세대 난방 및 근린상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이 설치되며, 도시가스 관련 법규상 원활한 배관 상태점검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나 커버 없이 배관이 외부에 노출 시공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환경

■ 세대 각 층별 복도에는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각층 좌우로 엇갈리게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임차인이 개인물건을 적재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합니다. 피난구용 사다리는 2층까지만 연결이 되어 있으며, 3층에서 3층 정원 및 계단실, 2층 근린생활시설 복도 및 계단실을 통하여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별도로 지급되는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A동과 B동이 서로 면해 있는 세대의 경우 프리이버시 및 일조, 조망에 불리할 수 있으며, 층수와 호수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므로 일조, 조망, 소음, 미관,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한 동호 교환은 불가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옥탑 옥상에는 비상시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헬리포트 구조상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헬기 이착륙,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절대 출입할 수 없고 헬리포트를 이용하는 경우 추락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동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특성상 층,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한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세대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습기로 인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진동,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차량 주출입구, 1층 주출입구, 지하6층~지상40층 승강기홀, 엘리베이터 내부, 40층 스카이라운지, 20층 피난안전구역, 3층옥상정원, 관리실, GX룸, 피트니스, 독서실, 북카페, 키즈도서관, 세탁실,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실임차인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통제시스템은 지하층, 지상 1~3층 엘리베이터 전실과 비상계단 출입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 주차관제 설비는 지상 1층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건물로 진입하는 차량을 1차 통제하고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입주민 주차장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로 주차차단기 등 주차관제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임차인의 편의와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진출입구, 외부도로 진출입구 및 단지 내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주거공간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 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절, 갑작스런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개폐기 패드 등)이 북측 출입구 좌측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난방용 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수평배관이 각 동 3층과 4층 사이에 설치될 예정으로 4층 일부 세대의 외부 창호를 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층수와 호수는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므로 일조, 조망, 소음, 미관으로 인한 동호 교환은 불가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법에 따라 세대 내 비상조명등(현관천정) 및 현관문 상부에 축광유도표지(비상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는「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따라 본 단지에 설치됩니다. 임차인 등은 본 시설 설치에 따른 전자파 위해성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전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실 내 설치되는 멀티프레스 외 일부 장비는 기간사업자 제공분으로 시공사에 설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자전거 보관소, 환기탑 등의 위치, 크기, 개소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공용홀(로비) 규모 및 천장고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으며 청약 신청자 및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 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기계, 전기 등의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지하 1층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생활폐기물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층수, 외관 등의 변경에 따라 위치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단지 필로티 내부 및 아파트 주변에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임차인의 원활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하여, 관리주체는 임차인에게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보관함 설비의 설치 위치 및 택배함 개수는 설치 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옥외 조경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 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 중 냉난방기 실외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와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시스템 그릴을 필히 오픈해야 하고,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는 동절기의 경우 결로 방지 및 단열을 위해 시스템 그릴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 건축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세대 내부 천정 및 벽체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한 이후 임차인의 사용 중 실수 및 사용상 발생한 하자는 해당 임차인이 보수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단지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홈페이지 또는 팸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 색채계획, 단지 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입,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 저해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각종 사인물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환경

■ **단지 서측에 고층의 사학연금회관이 위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KT&G 서대전지사가 위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둥지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750m 반경 내 서측으로 1호선 정부청사역이 위치하고 남측으로 1호선 시청역이 위치합니다.
■ 단지 350m 거리에 고속버스 둔산정류소(공항리무진, 일반버스, 급행버스 등)가 있습니다.
■ 단지 2km 내 월평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상권 등 편의시설이 위치합니다.
■ 단지 2km 내 을지대병원, 센텀종합병원, 더블유여성병원, 밝은누리안과병원 등 의료시설이 위치합니다.
■ 단지 4km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을지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5개 대학교가 있으며 서원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둔산초등학교, 탄방초등학교, 갈마초등학교, 둔산중학교, 갑천중학교, 대전문정중학교, 오정중학교, 탄방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대전둔산여자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등이 위치합니다.
■ 단지 인근에 샘머리공원, 정부대전청사 숲의공원, 한밭수목원이 소재하며, 북측 1.5km 내 대전엑스포시민광장이 위치합니다.
■ 단지 남측에 8차선 한밭대로, 동측에 문예로, 북측에 둔산중로가 위치하여 차량 등의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기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상하수도·가스·학교·공공시설·가로공원 등의 각종 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홍보관,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당해 사업지 외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부지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전자파, 전자기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환경의 변화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개발현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감리회사
㈜이베데스다대한제3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자번호: 386-87-01302]	㈜이랜드건설 [사업자번호: 105-86-17343]	대한토지신탁(주) [사업자번호: 116-81-65952]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사업자번호: 116-81-03693]	㈜아이팝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자번호: 314-81-61069]

■ **사이버 모델하우스 : 이랜드피어둔산.kr**
■ **홍보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9번지 사학연금회관 1층 이랜드 PEER 둔산 홍보관**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1660-0807**